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
(허성무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68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1.

발 의 자 : 허성무 · 이정현 · 박선원  
김정호 · 김종민 · 정혜경  
허종식 · 김남근 · 윤종오  
서미화 · 이훈기 · 전종덕  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재난의 발생 또는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휴·폐업 또는 조업중단 중소기업의 증가 또는 증가 우려에 대응하여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국제분쟁, 상대국의 무역제한조치 등 대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원자재가격·에너지가격·운임 등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가 가시화되기 전에 유동성 위기가 나타나는 등 피해가 업종 간 경계를 넘어 빠른 속도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위험방지 및 위기대응 차원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공급망 위험 및 에너지 가격 급등을 포함한 대외적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상황에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 중소기업에 대한

우대 및 신속 지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61조).

##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1조제1항 중 “발생,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로”를 “발생,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(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협,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포함한다) 등의 사유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“지원”을 “우대 및 신속지원 등 세부 지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거쳐야 한다.

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제4호에 따른 지원내용과 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

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계획 추진실적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<신 설>

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중소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 제4호에 따른 지원내용과 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